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연월일 : 2003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기술경쟁시대를 맞아 직무발명에 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의식을 확산하고
-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재정비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 하는 공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여 명확히 함(제2조)
 - 발명기관의 장, 도유특허권, 처분, 처분수입금
- 발명의 승계결정, 출원, 처분을 용이하게 함(제7조, 제8조, 제11조)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발명신고를 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승계여부 결정 및 내용통지, 출원, 처분을 하였으나
 - 상기사항을 발명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허권의 등록·관리 및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

- 특허출원시 “출원인” 기재방법을 변경함
 - 종전 : 지방자치단체의 장 [예, 충청북도]
 - 변경 :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 [예,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 도유특허권 및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처분규정신설(제11)
- 처분보상금, 등록보상금의 지급액을 조정함(제10조,제12조,제18조)
- 권리처분으로 도 세입을 증대시킨 기관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제13조)

의안전문 : 따로 붙임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충청북도개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발명기관의 장"이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도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도명으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배가
 - 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
 - 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7. "처분수입금"이라 함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외계연도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 및 도유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직무발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발명내용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특허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이하 "도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도승계 하는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

제7조(도승계의 결정) 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발명기관의 장은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도승계 시킬 것 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으로부터 도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없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도승계발명의 출원 및 등록) ① 발명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발명기관의 장을 부기하여 도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발명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명기관의 장은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사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도명의로 특허권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 : 충청북도
2. 관리청 : 충청북도지사
3. 송계청 : 발명기관의 장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 ①발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송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보상금) ①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 ①발명기관의 장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시 그 내용을 도지사와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수입금은 도의 세입으로 하며, 처분을 한 발명기관의 장은 처분에 따른 대금의 수납 및 처분보상금·기관포상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보상금) ①도지사 또는 발명기관의 장이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1,000만원) × 20/100 + 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만원) × 10/100 + 1,100만원

②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 각호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기관포상금)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시기) ①보상금 등의 지급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2. 처분보상금 및 기관포상금은 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3.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지급 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자유발명의 승계) 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 ①발명자 또는 발명기관의 장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상대방이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발명자·발명기관의 장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자는 당해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관용) ①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때 권리당 실용신안권액에 따라서는 3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계출원의 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승계하여 출원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도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도청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	① 성 명	한글 : 한자 :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소 속	현재 :	(발명당시 :)
	⑤ 직급·직위	현재 :	(발명당시 :)
	⑥ 발명의 종별	특허(실용신안, 외장)	
⑦ 발명의 명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발명기관의 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의 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등 록 요 청 서

발 명 자	① 성 명	한글 : _____ 한문 : _____	② 주민등록 번 호	
	③ 주 소			
	④ 소 속	현재 : _____	(발명당시 : _____)	
	⑤ 직급지위	현재 : _____	(발명당시 : _____)	
	⑥ 권리의 표시	특허(실용신안, 의장) 출원(등록) 제 _____ 호		
⑦ 발명의 명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의 장 ②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 1부
2. 특허사정서 사본 또는 특허증 사본 1부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기재 서면 1부

관계법령 발췌

【특허법】

第39條 (職務發明) ①從業員·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하 "從業員등"이라 한다)이 그 職務에 관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상 使用者·法人 또는 國家나 地方自治團體(이하 "使用者등"이라 한다)의 業務範圍에 속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행위가 從業員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職務에 속하는 發明(이하 "職務發明"이라 한다)에 대하여 從業員등이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承繼한 者가 特許를 받았을 때에는 使用者등은 그 特許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은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전담조직소유로 한다.

③從業員등이 한 發明중 職務發明을 제외하고는 미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特許權을 承繼시키거나 使用者등을 위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로 된 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는 國有財産法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特許廳長이 이를 管掌한다.

⑤第4項의 國有特許權의 處分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 (職務發明에 대한 補償) ①從業員등은 職務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 또는 職務發明에 대한 特許權을 契約 또는 勤務規程

에 의하여 使用者등으로 하여금 承繼하게 하거나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의 額을 決定함에 있어서는 그 發明에 의하여 使用者등이 얻을 이익의 額과 그 發明의 完成에 使用者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 또는 조령으로 정한다.

③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하여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조직이 이를 承繼한 경우에는 正當한 補償金을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補償金의支給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령 또는 조령으로 정한다.

第100條 (專用實施權) ①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專用實施權者는 特許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第99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102條 (通常實施權) ①特許權者는 그 特許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特許發明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③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移轉할 수 있다.

④第138條, 實用新案法 第53條 또는 意匠法 第70條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은 그 通常實施權者의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과 함께 移轉되고 당해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意匠權이 消滅된 때에는 함께 消滅된다.

⑤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 移轉할 수 없다.

⑥第3項 및 第4項외의 通常實施權은 特許權者(專用實施權에 관한 通常實施權에 있어서는 特許權者 및 專用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⑦第99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실용신안법】

第25條 (技術評價의 請求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 이 법 第5條·第7條·第8條 第1項 내지 第4項·제9조제3항 또는 제4항, 이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2. 제2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3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實用新案登錄된 후 그 實用新案權者가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實用新案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實用新案權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5. 제35조제2항 단서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6. 제14조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벗어난 보정인 경우

② 審査官은 技術評價 결과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實用新案登錄을 維持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3項·第4項 또는 第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趣旨 및 理由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技術평가청구인 및 실용신안권자(技術평가청구인과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取消理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그 實用新案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용신안등록취소결정이 確定된 때에는 實用新案權은 그 實用新案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등록보상금) ①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에 대하여 매 권리당 50만 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처분보상금) ①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의 30/100
2.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처분수입금-1,000만원)×20/100 + 3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처분수입금-5,000만원)×10/100 + 1,100만원

②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관포상금) 특허청장은 국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포상금을 발명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처분수입금이 1천만원초과 5천만원이하인 경우 : 100만원
2. 처분수입금이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인 경우 : 500만원
3. 처분수입금이 1억원을초과하는 경우 : 1천만원

제22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 ①이 영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 및 의장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의장권은 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에 대한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